



유익한 aT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한
중국 식파라치
알아보기

중국 식파라치
알아보기



유익한 aT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한
중국 식파라치
알아보기

중국 식파라치 알아보기

수출 현지화지원사업은 20개국 현지 자문기관을 통해 해외 현지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현지 법률 및 통관 정보 등을 제공하여 원활한 농수산물 수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발/간/사

파파라치로 인해 20년 전 영국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1년 여 전 불거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은 통관거부 강화와 식파라치로 한국 농식품 수출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186%로 대폭 늘어나 166건에 달했습니다. 8월까지 대중국 농식품 수출은 8.6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1% 감소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사히 통관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2015년 10월 1일 중국의 식품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대해서 10배 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을 전문 타깃으로 하는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되면 2년간 소송제기와 취하 반복 등 소송준비에 시달려야 하고,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 중인 제품의 철수 및 반품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판례를 분석하여 자료집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사례집이 한국 농식품 수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aT는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규정에 부합한 라벨링 제작·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17년 9월
사장 여인홍

CONTENTS

...

I 식파라치 개요	05
II 식파라치 사례	11
01 중문라벨이 없는 간장	12
02 중문라벨이 없는 라면	14
03 식용금지 경고문구 미기재 떡볶이	16
04 인삼차 중문라벨에 식용 부적합군 미표기	18
05 인삼주 중문라벨에 1일 섭취제한량 미표기	20
06 경화유를 사용한 식품은 트랜스지방 함량 표기해야	22
07 과실수확년도 미기재 올리브유	24
08 알로에는 베라알로에겔만 일반식품으로 사용 가능	26
09 성분, 생산허가증 미기재 쌀	28
10 살구씨 표기오류 아몬드캔디	30
11 강황을 강황소로 오기한 쿠키	32
12 영양성분표의 수치 산출 부정확 고풍차	34
13 표기사항 혼동 막대사탕	36
14 근거 없는 유기농마크 아자유	38
15 6.5% 알코올 도수 포도주	40
16 중국 온라인상 판매되는 육포, 소고기다시다	42
17 러시아산 소고기는 중국에서 수입 금지	44
18 익모초 첨가 음료	46
19 비타민C 첨가 과자류	48
20 비타민E 첨가 과자류	50
21 황기 추출물 함유 음료	52
22 닭벼슬 추출물 사용 식품	54
23 한국에서 개발한 기능성원료 첨가음료	56
24 아마씨 첨가 시리얼	58
25 코엔자임Q10 영양제	60
26 아마씨가루 포함된 빵가루 판매 불가	62
27 성분표시 잘못된 건조 해삼	64
28 칼슘을 첨가한 조미김	66
29 라벨내용과 실제 영양성분 함량 불일치 호두과자	68
30 중문표기 잘못된 외국 초콜릿	70
31 무늬만 수타면	72
32 품질등급 미기재 건포도	74
33 포장된 녹차 원물	76
34 불량식품 바꿔치기 식파라치	78
부록	79
대중국 식품 통관 개요	80
2017 현지화지원사업 안내	86

I 식파라치 개요



at

| I 식파라치 개요 |

중국 식파라치 소송 판례집 분석

1. 중국 식품안전법 <2015년 10월 1일 신식품안전법 시행>

●● 시행 배경

- ▣ 중국에서는 과거 멜라민 분유 파동, 하수구 재활용 기름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식품들이 생산, 유통되어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제품 섭취에 따른 소비자의 질병 발생 사고 등이 다수 발생함
- ▣ 식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에서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가짜 식품이나 비위생적인 식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불법 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으며, 생산자와 판매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식품약품관리감독국, 공상국 등 유관 부문의 인력, 행정 자원의 부족, 혹은 관리 감독의 부실이 그 원인으로 지목됨
- ▣ 불법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단 행정부문의 관리 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위법한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생산자와 경영자에 '징벌성 배상'으로 '경제적 손실'을 실체화하여 식품안전 체계를 바로잡는 데 일조하고자 함

●● 시행 시기 및 배상 조항 <라벨 하자가 소비자를 오도한다면 10배 배상>

- ▣ 중국의 초기 식품 안전법은 2009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배상 조항에서는 '식품안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모두 민사상의 배상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손실의 10배 배상 책임)

- ▣ 2015년 10월 1일 식품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배상 예외의 규정이 추가됨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라벨 하자는 배상 규정 적용 예외) 해당 규정은 곧,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 하자'는 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로 신식품안전법 시행 후 전문 식파라치들의 소송 중 '라벨하자'에 관한 소송이 다수를 차지함

2. 직업 파파라치의 등장 배경 및 활동 범위

●● 직업 파파라치의 등장 배경 및 활동 범위

- ▣ (배경) 소비자권익보호법은 3배, 식품안전법은 10배 배상 규정
 - 식품안전법의 시행의 의미와 중국 당국의 고심을 알고 있는 직업 파파라치들이 기존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이 3배의 배상규정을 둔 데 비해 식품 안전법은 10배의 배상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면서 식품을 전문 타깃으로 하는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게 됨
- ▣ 활동 범위 분석 <행정기관에 투서를 하지 않고 법원에 바로 고소>
 - 기존에는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먼저 고발하여 처벌 통지서가 나오면 이를 가지고 생산자 혹은 판매자를 협박하여 10배 배상금 범위 안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단 처벌 통지서가 내려오고 그 금액이 많을 경우 업체들이 폐업을 하거나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생기면서 해당 절차 없이 바로 법원에 고소를 진행
 -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통상 '대형마트'가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대형마트는 경제적인 배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수입식품과 대형마트에 대해 통상 배타적으로 판결하는 중국 재판부의 특성상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이 식파라치들의 주요 타깃이 됨

▣ 구매 및 소송유형 <구매는 한 번에, 소송은 소액부터 시작>

- 식파라치는 통상 1인이 아닌 집단을 이루어 활동하며, 시장 조사팀, 구매팀, 소송 전담팀 등으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함
- 특히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발견하면 전국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소송은 여러 명이 나누어 진행하기도 함
- 판매자가 소장을 받으면 법원에 출두하여 '사전합의 절차' 를 거쳐 10배 범위 내에서 합의를 받아내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목적임
- 또한 싹쓸이 한 제품을 한 번에 고발하지 않고, 우선 소액부터 소송을 시작하여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경우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소송을 시작한 후 협박하는 케이스가 많음

▣ 법원의 입장 <전문 식파라치라도 식/약품 관련 소송은 지지>

- 통상 판매자는 이러한 식파라치들의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배상금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구매한 것'이며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니므로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이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역 법원별로 판례가 다양하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2014년<최고인민법원의 식품약품분쟁사리에 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에서 만약 식품안전을 위배했다면 직업 식파라치라고 하더라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음
- 2017년 5월 1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회신(제12차 전국인민대회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가짜임을 알고 구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식품과 약품을 제외한 영역, 즉 '공산품'영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직업 파파라치의 악의적인 구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함. 이는 곧 '식품과 약품'은 악의적인 구매라고 할지라도 식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면 그 배상 책임이 여전히 존재하며, 단속 기관의 한계를 '징벌성 배상'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식파라치가 중국 법원에 식품안전법 관련 건으로 다수의 소송 기록이 있다면 아주 경미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는 추세임

3. 판례 분류 및 분석

●● 직업 파파라치의 등장 배경 및 활동 범위

- 판례를 분석해보면 수입식품 소송 사례는 크게 '라벨 표기 부적합' 혹은 '원료 사용 부적합'으로 나뉨
- 중문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행위, 라벨에 필수 표기 항목을 누락한 행위 등 '라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식파라치들이 대형마트에서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중문라벨에 '원료' 기재 부분의 원료와 첨가제, 영양강화제 첨가 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중국에서 허가한 원료가 아니거나 첨가제와 영양강화제 규정을 위반한 제품은 중국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음

4. 대응 방안 <수출 전 라벨, 원료 심의를 받아야 함>

●● 식파라치로 인한 피해

- 일단 식파라치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 판결의 결과와는 관계 없이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통상 2년 동안 소송 제기과 취하를 반복)과 비용(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에 진행) 등 물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한창 유통중인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철수 및 반품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소송을 당한 마트가 배상금 지불 판결이 나오면 제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하거나 배상을 해 주는 등 타격이 매우 큼

●● 대응 방안

- 제품 수출 전, 혹은 바이어 개척 전 제품이 중국의 규정에 맞는지 aT현지화 사업의 도움을 받아 심의를 받아 보고, 만약 원료 등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면 수출에서 제외하거나 원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을 준비
- 중문라벨은 중국의 예포장식품 라벨 통칙 규정이나 유관 법규를 기준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식품안전법에 부합하는 라벨을 작성하여 부착하여 원활한 통관 및 유통 시 식파라치 소송의 리스크 최소화
-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 식파라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함
- 식파라치의 협박이나 위협, 혹은 제시한 증거가 조작된 것 등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고 소송 대응 방향과 방안을 마련해야 함

II 식파라치 사례



aT

01

“중문라벨이 없는 간장” 수입식품에는 중문라벨을 필수로 부착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미부착
품목 간장(한국산)



피해사례	<p>사건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가 북경 대형마트에서 한국산 간장 1병(16.8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2017년 5월 원고 승소판결) • 제기사유 : 수입식품에 중문라벨 미부착, 식품안전법에 위배된 식품 판매
판례 분석결과	<p>판결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는 마트에 구매한 간장 1병을 10일 내 반품한다 • 유통업체는 구매대금을 원고에 환불한다 • 유통업체는 원고에게 배상금 1,000위안을 10일 내 지불한다 • 유통업체(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p>법리 분석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식품안전법은 ‘수입 예포장식품과 식품 첨가제에는 반드시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는 법원에 북경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행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해당 통지서에 라벨이 없이 판매된 제품 수량, 가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법원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함 * 마트는 수입통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검역 합격증을 제출 하였으나, 법원은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점은 규정 위반으로 판단함 • 마트가 판매 전 라벨 부착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 한 것으로 간주, 10배 배상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수입예포장식품 등 중문라벨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제97조 중문라벨 규정

수입예포장식품,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중문라벨이 있어야 함. 설명서 동봉이 규정된 제품은 중문 설명서가 동봉되어야 함. 라벨, 설명서는 반드시 중국의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 및 중국 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예포장식품에 중문라벨, 설명서가 없거나 중문라벨, 설명서가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음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소비자권리) 소비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으로 인하여 경영자와 생산자에게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배상규정)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임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경영한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외 생산자 혹은 경영자에게 지불한 금액의 10배의 금액 혹은 손실의 3배 금액을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배상금이 1천위안 이하일 경우 1천위안을 배상금으로 한다.
- (예외규정) 그러나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에 속하지 않는 라벨 혹은 설명서 상의 하자일 경우는 제외한다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제품 수출 전 중문라벨의 내용을 확정하여 한국에서 부착 후 검수 과정을 거쳐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득이한 상황으로 중국에서 부착해야 할 경우 부착할 중문 라벨의 내용을 수입자와 사전에 공유해야 함

- 수입식품의 수입통관 검역 시, 중문라벨 부착 유무는 검역의 필수항목으로, 중문라벨이 규정에 따라 부착되어 있어야 정상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검역 합격증이 발급됨
- 통관 시간 단축을 위해 일부 화물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통관할 경우 검역 시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검역 합격증이 발급되었다고 해도, 소송을 당할 경우 식품안전법 제 97조에 의거 중문라벨이 없는 제품은 수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비 정상 경로로 통관된 화물로 추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02

“중문라벨이 없는 라면”

인터넷 쇼핑몰 판매도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 법규 적용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미부착
 품목 라면(한국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가 타오바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산 라면 5개들이 1봉지 (32위안) 구매 후 타오바오(피고1)와 판매자(피고2)를 상대로 소송 제기 (광저우 2016년 10월 원고 일부 승소판결)
- 제기사유 : 판매자의 수입식품에 **중문라벨 미부착**, 식품 안전법에 위배된 식품 판매 및 타오바오의 감독 의무 소홀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원고는 구매한 라면 5개 들이 1봉지를 10일 내 반품한다
- 판매자는 원고에게 환불 및 배상금 1,000위안을 지불한다
- 판매자(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식품안전법은 ‘수입 예포장식품과 식품 첨가제에는 반드시 중문라벨이 있어야 함’ 을 규정하고 있음
 - * 타오바오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구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소송 참석 통지서를 받은 후 바로 해당 제품을 내리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변론
- 판매자가 라벨 부착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 한 것으로 간주, 판매자에 **10배 배상판결**
- 중문라벨 미부착 제품 판매에 대해 타오바오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를 피고에 제공했으므로 타오바오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수입예포장식품 등 중문라벨 규정

- 중국식품안전법 제97조 중문라벨 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인터넷쇼핑몰 ‘플랫폼 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법규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 제 44조 규정

- (소비자권리)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플랫폼 제공자의 의무)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는 실 판매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배상조항) 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는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인터넷 쇼핑몰 판매 시에도 라벨규정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식품안전법에 부합한 중문라벨을 부착해야 함

-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 경쟁 등의 이유로 수입식품이 중문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비정상경로 유통 제품)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경우가 빈번함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판매자가 물건을 수취한 주소 소재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므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식파라치 집단이 동시에 악의적으로 구매할 경우 판매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통상 판매자에 제품을 공급한 공급자가 사후 배상을 해주어야 하므로 공급자일 경우 중국식품안전법에 부합하는 중문라벨 부착 후 공급해야 함

03

“식용금지 경고문구 미기재 떡볶이” 실리카겔, 제습제 등 동봉 시 중문라벨에 식용 금지 관련 주의 문구 기재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표기사항 누락
품목 떡볶이(한국산)



피해사례	<p>사건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가 무석(无錫) 지역 쇼핑몰에서 한국산 떡볶이 식품 구매(11봉지, 396위안)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제품 안에 동봉된 건조제(실리카겔)에 관한 식용 금지 등 경고 문구 미기재,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례 분석결과	<p>판결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의 모든 소송 요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p>법리 분석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소비자권보호법에 의하면 인신, 재산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한 설명과 명확한 경고(설명)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제품에 동봉된 건조제의 봉투는 중국산으로 '산소흡수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영어로 DO NOT EAT이 기재되어 있음 • 제품에 비록 중문으로 '식용하지 마시오' 라는 경고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어로 내용물이 떡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영어 DO NOT EAT는 중문이 아니므로 경고 문구로 인정되지 않음)을 들어 경고 문구 미기재만으로 식품 본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점, 원고가 실리카겔을 먹고 인신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을 들어 소송 요구 기각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외국어 표기 관련 규정

중국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라벨통칙 GB7718
(3.8.2 외국어 표기) 외국어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중국어와 대응 관계에 있어야 하며, 모든 외국어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기가 작아야 한다

▶실리카겔 포장지 상에 쓰여진 DO NOT EAT 문구는 원고가 영어를 몰라서 식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규정에 중국어 표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문라벨에 별도로 표기해야 함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실리카겔 등 식용이 불가능한 물품이 함께 동봉되어 있는 경우, 중문라벨에 '중국어로' 주의 경고 문구를 기재해야 함 (조미김의 실리카겔, 김치의 팽창방지제 등 유의)

- 비록 해당 사건은 원고가 패소했으나, 소송에 참여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하는 과정에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식파라치에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기재 예시
 注意事项：开封时请注意内含独立包装防潮剂，不可食用
 주의사항：개봉 시 함께 동봉된 방습제는 식용하지 마시오

04

“인삼차 중문라벨에 식용 부적합군* 미표기” 신식품원료 별도 라벨 규정 준수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필수 표기 누락
품목 인삼차(한국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가 단독시 대형마트에서 한국산 인삼차 10상자(총 550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중문라벨에 신식품원료로 규정된 인삼을 원료로 사용했으나 임신부 및 수유기 여성과 14세 이하 어린이의 **식용 제한 강제 기재 항목** 누락,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판매자는 원고에게 구매금액 550위안과 배상금 5,500위안(구매대금의 10배)을 지불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원고는 인삼차 10상자를 마트에 반품한다

법리 분석결과

- 신식품원료(구 신자원식품)규정에 따라 5년근이하 인공재배된 인삼은 **중문라벨의 성분표에 '인삼(인공재배)', '14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및 수유부 식용 불가' 문구를 기재해야 함**
 - * 원고는 단독시 식약국의 의견서와 처벌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함
 - * 피고는 수입통관 합격 증명서, 검역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제품의 품질은 문제가 없으므로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대형마트로서 식품을 판매하기 전 식품안전법의 유관 규정을 확인하고 판매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 한 것으로 간주, **10배 배상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인삼(인공재배)의 신자원식품에 대한 공고

중국 위생부 2012년 제 17호 공고

- 중문명칭 : 인삼(인공재배)
- 라틴학명 : Panax Ginseng C.A.Meyer
- 기본 정보 : 5년근 및 5년근 이하 인공재배한 인삼의 뿌리와 줄기
- 식용제한량 : 3그램이하/1일
- 기타 표기 사항 : 임신부 및 수유기 여성과 14세 이하 어린이는 식용에 부적합 라벨과 설명서에 식용 부적합군과 식용 제한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신식품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반드시 신식품원료 규정에 별도 규정 하고 있는 필수 라벨 표기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

- 만약 직입 파파라치가 본인의 아내인 임신부 혹은 수유부나 자녀인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인삼차를 복용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중문라벨에 식용 부적합군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중문라벨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인해 실제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더욱 엄격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강제 표기사항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함
- 인삼관련 필수 표기사항이 기재된 모범 라벨은 인삼주 판례 사례 분석의 라벨 예시 참조

* 식용 부적합군 : 식품제조 시 포함된 성분 등과 관련하여 부작용, 유해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를 섭취하면 안 되는 대상

05

“인삼주 중문라벨에 1일 섭취제한량 미표기” 신식품원료 별도 라벨 규정 준수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필수 표기 누락
품목 인삼주(한국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직업 파파라치)가 청두 대형마트에서 한국수입 인삼주 35병 (총 16,030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2015년 11월 원고 승소판결)
- 제기사유 : 중문라벨에 **신식품원료로** 규정된 인삼의 **식용 제한량, 고형물 함량 등 미기재, 식품안전법 위반**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판매자는 원고에게 환불 및 배상금 160,300위안(구매대금 10배)을 지불한다
- 판매자(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신식품원료(구 신자원식품)규정에 따라 **5년근이하 인공재배된 인삼은 중문라벨의 성분표에 ‘인삼(인공재배)’, ‘14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및 수유부 식용 불가’ 문구를 기재**해야 함
- 중국식품안전법 유관 규정 중 고체와 액체가 혼합되어 있는 식품 중 **고형물이 식품의 주 원료일 경우 그 함량을 표기**해야 함
 - * 원고는 청두 식약국의 의견서와 처벌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함
 - * 피고(대형마트)는 수입통관 합격 증명서, 검역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비록 라벨에는 문제가 있으나 식품 안전의 본질적 문제와 무관함을 주장
- 법원은 대형마트로서 식품을 판매하기 전 식품안전법의 유관 규정을 확인하고 판매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 한 것으로 간주, **10배 배상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인삼(인공재배)의 신자원식품에 대한 공고

- 중국 위생부 2012년 제 17호 공고
- 19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예포장식품 라벨통칙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 4.1.5.6 예포장식품라벨통칙

- (고형물표기) 용기 중 고체/액체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 고형물이 주 원료로 사용 되었을 경우에는 순중량표기 외, 고형물의 함량을 질량 혹은 질량분수의 형태로 표기해야 함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신식품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반드시 신식품원료 규정에 별도 규정 하고 있는 필수 라벨 표기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

- 인삼주 라벨표기 모범사례(안)

제품명	XXXXXXX人參酒 (配制酒)
도수표기	酒精度: XX %vol
성분표기	配料表: XX, 人參 (五年以下人工种植根、茎), XX, XXX, XXX, XXX, XXX, XX
함량표기	净含量: 1000mL
고형물함량 표기	固形物: 不低于? 克 (或不低于? %)
식용부적합군 표기	不适宜人群: 孕妇、哺乳期妇女及14周岁以下儿童不宜食用。
1일 제한량 표기	食用限量: 人參食用限量≤3g/天。 每100mL本产品中人参含量: ?g
원산지표기	原产国: 韩国
생산일자표기	生产日期: 见瓶身标示 (年/月/日) /XXXX年XX月XX日
보존방법	贮存条件: 避免光线直射放在阴凉处, 开启后请尽快饮用。
생산자	生产商: XXXXXXXXXXXXXXXXXXXX
주소	地址: XXXXXXXXXXXXXXXXXXXX
수입상	进口商: XXXXXXXXXXXXXXXXXXXX
주소	地址: XXXXXXXXXXXXXXXXXXXX
연락처	电话: XXXXXXXX
음주에 대한 경고문구	警告: 过量饮酒, 有害健康。

06

“경화유를 사용한 식품은 트랜스지방 함량 표기해야” 중문라벨의 영양성분표에 필수 표기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필수 표기 누락
품목 캔디(한국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가 광저우 마트 수입식품 코너에서 한국산 밀크캔디 4봉지(43.6위안) 구입 후 소송 제기(2014년 6월 원고 승소)
- 제기사유 : 성분배합비에 '기름(부분경화유)'이 사용되었으나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 수치를 미표기한 것으로, 식품안전법 위반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판매자는 원고에게 **환불 및 배상금 479.6위안(구매대금 10배)**을 지불한다
- 판매자(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식품안전법 예포장식품영양성분라벨통칙에 따르면 성분 중 경화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표기 해야 함
 - * 피고는 중문라벨에 영양성분표 전체를 누락함
 - * 이는 성분표에 경화유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영양성분표는 중문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영양성분표가 누락된 중문라벨은 규정 위반으로 판매자가 판매 전 라벨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식품안전법에 위배된 것으로 **10배 배상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트랜스지방(산)미표기 식품안전법 위반 적용 규정

예포장식품 영양성분라벨통칙 규정 GB28050

- (강제표시항목)
 - 열량, 핵심영양소(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영양소참고수치(NRV)의 % 비율
 - 생산 과정 중 경화유(부분 경화유 포함)가 사용된 경우 혹은 성분에 경화유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을 표기해야 함
- (영양성분표 생략 가능 품목)
 - 신선식품(육류, 생선, 채소, 과일, 달걀 등)
 - 알코올 함량이 0.5% 이상인 주류
 - 포장지의 면적이 100cm²이하 혹은 최대 표시면의 면적이 20cm² 이하인 식품
 - 즉석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
 - 포장된 음용수
 - 매일 식용량이 10g 혹은 10ml 이하인 예포장 식품
 - 기타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영양성분표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포장 식품. 단, 상기 품목들의 포장지 상에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기재해야 함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해당건은 신식품안전법 시행 전(2015년 10월 전)으로 배상금이 1,000위안 미만일 경우 1,000위안을 배상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영양성분표를 생략해도 되는 규정된 식품유형 외, 일반 예포장식품은 반드시 중문라벨에 영양성분표를 기재해야 하며, 기재 시 반드시 유관 규정을 참고해야 함

- 영양성분표 참고

营养成分表			
项目	每份6g	NRV%	
열량	能量	127kJ	2%
단백질	蛋白质	0g	0%
지방	脂肪	1.4g	2%
트랜스지방산표기	-反式脂肪酸	0g	0%
탄수화물	碳水化合物	4.2g	1%
나트륨	钠	7mg	0%

07

“과실수확년도 미기재 올리브유”

품목별 중문라벨 필수표기사항 사전확인 필요해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필수표기사항 누락
 품목 올리브유(스페인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직업 파파라치)가 북경 슈퍼마켓에서 중문라벨이 부착된 올리브유 20병(1,130위안) 구매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 제기사유 : 올리브 과실수확년도 미기재 등 식품안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공개적으로 판매, 10배 배상 요구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유통업체는 구매대금을 환불하며, 해당물품을 돌려받는다
- 유통업체는 원고에게 배상금(물건구입가의 10배) 지불한다
- 유통업체(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은 강제규정으로 언제나 부합해야 하며, 해당 품목 라벨규정에서 과실의 수확년도는 필수기재사항으로 분류
 - * 검역통관 과정 중 적합한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대부분 이를 인정치 않음
 - * 라벨하자라 함은 경미한 인쇄상의 오류로 한정되며, 필수표기사항 누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식품을 경영하는 자(원고)가 '명백히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10배 배상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올리브유, 올리브포마스유 8조 라벨표기규정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23347-2009 올리브유 국가표준 8.라벨규정

- 라벨은 반드시 GB7718 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제품명칭 : 4장에서 규정한 제품분류에 따라 표기해야 함
- 생산일자 표기 방식
 - 엑스트라 버진올리브유, 미디움그레이드버진올리브유, 람판테버진올리브유는 반드시 올리브 과실의 수확년도를 기재해야 함
 - 미디움그레이드버진올리브유, 람판테버진올리브유 등은 반드시 포장일자를 기재해야 함
 - 유통기한은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 후 소포장의 형식으로 재포장되는 경우 재포장된 일자를 별도로 기재해야 함
- 원산국을 표시해야 함
-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을 표시해야 함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중문라벨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시 라벨하자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대응방향을 결정함이 바람직함

- 올리브유 라벨표기 모범사례(안)

제품명	牌特级初榨橄榄油	
성분	原料：特级初榨橄榄油	
원산지	产国：西班牙	
올리브과실수확년도	橄榄果实年份：2012年	
생산일자	生产日期：2014年7月19日	
유통기한	保质期：24个月	
보관방법	贮存条件：放置于阴凉避光处，7℃以下。	
주의사항	注意事项：低温时会出现凝胶或凝块，属正常现象，不影响食用。	
판매자 정보	经销商：地址：电话：	
净含量	750mL	
营养成分		
项目	每100毫升	NRV%
能量	3178千焦	40%
蛋白质	0克	0%
脂肪	91.3克	152%
碳水化合物	15.5克	78%
膳食纤维	0克	
单不饱和脂肪酸	65.1克	
多不饱和脂肪酸	10.7克	
胆固醇	0毫克	0%
碳水化合物	0克	0%
糖	0毫克	0%

08

“알로에는 베라알로에겔만 일반식품으로 사용 가능” 중문라벨에 사용 부위와 식용부적합군을 기재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중문라벨 강제표기사항 누락
품목 음료(중국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음료 23박스(1,069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2016년 11월 원고 승소판결)
- 제기사유 : 외포장지에 표기된 성분에 알로에 과육으로만 표기되어 있으나, 신식품원료 규정에 따르면 베라알로에겔에 한해 일반식품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성분표에 **신식품원료 강제 표기사항 누락**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 3,208,5위안(구매대금의 3배)**을 지불한다
- 유통업체(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위생부에서는 **알로에 중 '베라알로에겔'만 일반식품(신식품 원료)으로 공포**하였으며, 1일 제한량과 영유아와 임신부의 식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알로에의 표기 규정은 **주표시면이나 제품명에는 '알로에'라고 표기가 가능하지만, 성분에는 반드시 '베라알로에겔'로 표기**해야 하며, **임산부와 영유아는 식용에 유의**하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 * 원고는 알로에와 베라알로에겔의 구분에 대한 일반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로서는 중문라벨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표기사항 누락 행위는 곧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 피고는 자신은 판매만 했을 뿐 생산 자체는 관여하지 않았고, 또 판매 시 라벨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판매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변론
-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법원은 생산자가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판매자인 피고가 우선 원고에 배상 후 피고로 하여금 생산자에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언급함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중국 위생부의 알로에 신자원식품에 대한 공고

위생부 2008년 제12호 공고(신자원식품_베라알로에겔)

- (1) 학명 : Aloe Vera Gel
- (2) 식용부위 : 베라알로에 겔(과육부분)
- (3) 제조공정 : 베라알로에겔을 원료로 하여, 세척, 껍질 제거, 살균 등의 과정을 거침
- (4) 사용범위 : 식품류에 원재료로 사용 가능함
- (5) 제한량 : <=30그램/일
- (6) 부적합군 : 영유아/임산부

<참고2> 위생부 2009년 제1호 공고(베라알로에겔 표시규정)

- (1) '본제품에는 알로에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임산부와 영유아는 식용에 유의하세요'와 같은 문구를 기재해야 하며, 성분표에는 반드시 '베라알로에겔'로 표기
- (2) 주표시면과 제품명에는 '알로에'로 표기 가능함
- (3) 1일 섭취량에 대한 기준을 기재해야 함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참고3>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제품의 원료 중 신자원식품(신식품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유관 규정에 따라 중문라벨을 작성 및 부착해야 함

- 알로에음료 라벨표기 모범사례(안)

베라알로에겔표기 →

XXXXX蜂蜜芦荟茶
配料表: 芦荟(库拉索芦荟凝胶), 白砂糖, 蜂蜜, 葡萄糖浆, 柠檬酸, 维生素C, 食用香料, 水.
产品类型: 果肉饮料 果肉含量>40%

净含量: 1kg
原产国: 韩国
饮用方法: 取本产品约3-4勺(20g)倒入温水中约80ml, 充分搅拌后即可饮用.
贮存条件: 避免阳光直射, 置于阴凉干燥处, 开封后, 冷藏保管.
生产日期: 见标签正面(年/月/日)
保质期: 2年
进口商: 青岛XX商贸有限公司
地址: 山东省青岛市城阳区
电话: 0532-8386-XXXX

식용부적합군 표기 → 本品添加芦荟, 孕妇与婴幼儿慎服
알로에 1일 식용제한량 표기 → 每日芦荟食用量不超过30g

营养成分表		
项目	每100g	NRV%
能量	979kJ	12%
蛋白质	0g	0%
脂肪	0g	0%
碳水化合物	57.6g	19%
—糖	56.2g	
钠	77mg	4%

09

“성분, 생산허가증 미기재 쌀” 라벨 강제표기사항 반드시 검수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강제표기사항 누락
품목 쌀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직업 식파라치)가 피고(슈퍼마켓) 사업장에서 쌀(8,070위안)을 구매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 제기사유 : 성분, 생산허가증 미기재 등 식품안전법에 반하는 식품을 판매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피고는 구매대금 환불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물건구입가의 10배)을 지불한다
- 피고는 소송비용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은 강행규정이므로, 라벨규정에서 **첨가 성분과 생산허가증 번호** 등은 필수기재사항 임
- 식품을 판매하는 자(피고)가 '명백히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10배 배상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포장식품 라벨통칙 제4조 표기내용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2011 포장식품 라벨통칙 4. 표기내용

- 4.1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포장식품 라벨표기내용
 - 4.1.1 일반요구
-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포장식품 라벨표기는 식품명, 첨가 성분표, 함량과 규격, 제조상 또는 유통상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보관조건, 식품제조허가증 번호, 제품표준번호 및 기타 표기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2항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라벨의 디자인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라벨의 강제 표기사항은 반드시 검수과정을 거쳐야 함
- 라벨의 표기사항 중 함량(글자크기에 대한 요구) 등 특별사항은 반드시 전문가 및 실무자급들이 2,3번에 걸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검토를 하여야 함
- 라벨상의 표기가 잘못되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모범사례(안)

제품명		营养成分表	
产品名称	配料: 水稻	项目	每100克(g)
配料	执行标准: GB/T19268	能量	1470千焦(kJ)
质量等级	质量等级: 优质一等	蛋白质	5.8克(g)
净含量	净含量: 5kg	脂肪	0克(g)
产地	产地: [redacted]	碳水化合物	79.2克(g)
保质期	保质期: 12个月	钠	0毫克(mg)
贮存条件	贮存条件: 阴凉、通风、干燥处		
生产日期	生产日期: 见喷码或封口		
经销商	经销商: [redacted]		
地址	地址: [redacted]		
生产商	生产商: [redacted]		
地址	地址: [redacted]		
生产许可证编号	生产许可证编号: [redacted]		
电话	电话: [redacted]		

10

“살구씨 표기오류 아몬드캔디”

성분 원재료 중 동/식물의 명칭은 영문학명을 중문과 대조하여 기입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성분 명칭 기재 오류
 품목 아몬드 사탕(한국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가 청두시 대형 쇼핑몰에서 한국산 아몬드캔디(2,193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2016년 원고 일부 승소)
- 제기사유 : 성분배합비에 기재된 ‘살구씨(杏仁)’ 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 제품에 사용된 것은 ‘아몬드(扁桃仁)’ 로 소비자 기만, 식품안전법 위반, 3배 배상 요구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구매금액 2,193위안과, 배상금 2,193위안(1배)을 지불
- 기타 소송 요구는 기각한다

법리 분석결과

- 식품안전법에서 **예포장식품에는 반드시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에는 반드시 성분표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중국에서 통상적으로 아몬드는杏仁으로 불리기도 하며, 그 생김새가 매우 유사하긴 하나 학명으로 대조했을 때 扁桃仁이 정확한 명칭임 (실제 모양으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식별이 어려움)
 - * 원고가 이미 식약국에 투서 후 식약국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불법소득 1,1837.1위안을 몰수하고, 80,353.2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진행
 - * 피고는 고의성이 없었고, 중국에서 살구씨와 아몬드를 구분 없이 불리우는 점을 들어 변론함
- 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에 따르면 징벌성 배상의 조건은 권익을 침해한 자가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어야 하고, 권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로 인해 인신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나, 본 건에 대하여 피고는 식품안전법을 위반하긴 했으나 고의성이 없고, 원고 역시 인신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행정 기관의 처벌이 엄중히 진행된 바, 법원에서 과중한 처벌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배상요청은 1배로 한정함**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식약국 벌금 부과 근거

중국식품안전법 제 86조 식약국 벌금 부과 근거

- 이하 상황에 속하는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생산에 사용된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한다. 위법으로 경영된 식품의 가치가 1만위안 이하일 경우 3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 1만위안 이상일 경우 화물 가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생산과 영업을 정지하고 영업허가를 말소한다
 - (1) 포장지, 용기, 운송도구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경영한 경우
 - (2) 라벨이 없는 예포장식품과 식품첨가제를 생산, 경영하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3) 식품생산자가 식품안전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한 경우
 - (4) 식품생산, 경영자가 식품에 약품을 첨가한 경우

수입예포장식품 등 중문라벨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제97조 중문라벨 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한국에서 사용하는 식품 원료 명칭(특히 동식물)은 반드시 영문 학명을 확인하여 전문 기관의 심의를 거쳐 정확한 중문명칭을 기재해야 함

예시)

- 고구마는 통상 중국에서 ‘地瓜’, ‘红薯’로 불리나, 정확한 명칭은 番薯로 기재해야 함
- 미역은 통상 중국어로 ‘海带’, 다시마는 ‘裙带’로 불리나 영문 학명을 대조했을 때 미역이 裙带, 다시마가 海带임

11

“강황을 강황소로 오기한 쿠키”

식품첨가제의 명칭은식품첨가제 국가표준에 기재된 정확한 명칭으로 표기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성분 명칭 기재 오류
 품목 쿠키(영국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가 북경시 대형 쇼핑몰에서 영국산 쿠키(15개, 217.5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성분배합비에 기재한 착색제 ‘강황소(姜黄素, 커큐민)’는 과자류에 첨가 불가능한 것으로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구매금액 217.5위안을 환불한다
- 기타 소송 요구는 기각한다

법리 분석결과

- 식품첨가제국가표준 GB2760에 따르면, ‘커큐민색소’는 베이커리 식품류에 첨가 불가
 - * 원고는 해당 제품이 식품첨가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 피고는 해당 첨가제는 강황소가 아닌 ‘강황’이며, 라벨에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함. 강황은 베이커리 식품류에 적정량 첨가가 가능함
 - * 피고는 영국에서 제공한 생산 관련 증명서를 통해 실제 첨가된 물질은 ‘강황’임을 증명하였고, 중국에서 표기를 잘못 한 것이라고 주장함
- 중국 식품안전법에 의하면 예포장 식품에는 반드시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단 해당 사안은 실제 첨가된 것이 강황인데 강황소로 잘못 표기된 것임을 증명한 바 라벨 하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반품 외 배상 요구 사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수입예포장식품 등 중문라벨 규정

- 중국식품안전법 제97조 중문라벨 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제품 유형을 확정된 후, 해당 유형에 첨가 가능한 식품 첨가제인지 중국 식품첨가제 규정 GB2760 기준으로 확인 후 기재해야 함

- 만약 해당 식파라치 고소건과 같이 라벨 하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첨가한 것은 해당 유형에 첨가가 가능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해당 식품 유형에 첨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0배 배상금 판결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사전에 전문 심의기관에 첨가제의 정확한 영문명칭(INS번호 등)을 확인하여 대응되는 정확한 중문 첨가제 명칭을 찾고, 향후 라벨 하자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2

“영양성분표의 수치 산출 부정확 고형차” 라벨하자에 속하더라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구분 식파라치
유형 영양성분 표기 오류
품목 차류(한국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가 중경시 대형마트에서 한국산 고형차 8곽(657.4위안) 구입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영양성분표 상에 기재된 영양성분 표기사항 수치 오류, 식품안전법 위반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판매자는 원고에게 657.4위안을 환불한다
- 원고의 기타 청구를 기각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식품안전법 예포장식품영양성분라벨통칙에 따르면 영양성분표에 기재되는 NRV(영양소 참고수치의 백분율)%의 계산 공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와 중문라벨에 기재된 수치가 불일치함
 - * 중문라벨에 기재된 수치는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으로 산출된 수치와 다름
 - * 피고는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
- 비록 중문라벨에 기재된 수치에 오류가 있으나 이는 수치를 잘못 기재한 ‘라벨하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로서 하여금 이러한 하자가 잘못된 결정(구매행위)을 하게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상 청구는 기각함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예포장식품 영양성분라벨통칙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GB28050 예포장식품 영양성분라벨통칙 규정

- (강제표시항목)
 - 열량, 핵심영양소(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영양소참고수치(NRV)의 %비율
 - $NRV\% = X / NRV \times 100\%$ (X=식품 중 해당 영양소의 함량, NRV=X의 영양소 참고치)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일반 예포장식품은 반드시 중문라벨에 영양성분표를 기재해야 하며, 기재 시 반드시 유관 규정을 참고해야 함

- 한국과 중국의 영양성분표 기재 방법과 단위 등은 차이가 있으므로, 중국의 규정에 맞게 사전 심의를 통해 정확한 영양성분표를 작성해야 함
- 영양성분표 참고 GB28050

구분	NRV기준치
열량	8400kJ
단백질	60g
지방	≤60g
트랜스지방산	≤20g
탄수화물	300g
나트륨	2000mg

营养成分表			
项目	每份6g	NRV%	계산법
열량 能量	127kJ	2%	127/8400kJ×100=1.5
단백질 蛋白质	0g	0%	0/60g×100=0
지방 脂肪	1.4g	2%	1.4/60g×100=2.3
트랜스지방산 反式脂肪酸	0g	0%	0/20g×100=0
탄수화물 碳水化合物	4.2g	1%	4.2/300g×100=1.4
나트륨 钠	7mg	0%	7/2000mg×100=0.35

* 산출된 수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재

13

“표기사항 혼동 막대사탕”

포장지에 날인된 유통기한/생산일자는 한글표기사항과 일치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유통기한/생산일자 표기오류
 품목 막대사탕(한국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가 북경 대형 소핑몰에서 한국산 막대사탕 284개(4,583.7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피고 불복, 상소 후 동일 패소)
- 제기사유 : 중문라벨에 기재한 ‘생산일자 : 외포장지 상단 별도 표기’에 대해 한글 포장지의 ‘유통기한 : 외포장지 상단 별도 표기’문구를 들어 외포장에 날인된 날짜는 ‘유통기한’이며,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으므로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구매금액 4,583.7위안과, 배상금 45,837위안을 지불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몰수해야 마땅하므로, 원고는 제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법리 분석결과

- 수출국의 외포장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중문라벨을 부착하여 수출을 진행할 경우, 생산 로트 번호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외포장지의 한글 기재사항 기준으로 생산일자/유통기한을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봄
 - * 원고는 해당 제품의 한글 외포장지 번역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외포장지의 일자는 유통기한(한글표기사항 중 유통기한 : 외포장지 상단 별도표기)임을 주장
 - * 피고는 중문라벨에 생산일자 : ‘외포장지 상단 별도 표기’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중문라벨 기준으로 판단하여 생산일자라고 주장함
 - * 피고는 수입통관 증명, 한국 공장의 생산공정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함
- 법원에서는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해당 제품에 인쇄된 일자가 ‘유통기한’이 아님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함
- 중문라벨을 떼어 간단하게 확인만 했어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파는 일은 없었을 것이므로 ‘알면서도 판매한 고의성이 있음’으로 판단, 10배 배상 판결
- ‘직업식파라치’로서 악의적으로 대량 구매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근거로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유통기한/생산일자’ 기재에 관한 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 예포장식품라벨통칙

- (4.1.1 표시 내용 중 일반요구)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예포장식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명칭, 성분표, 순중량 및 규격, 생산자와 경소상 명칭과 주소 및 연락처,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보관방법 및 기타 표시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 (4.1.7.1 날짜표기)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은 ‘포장지의 특정 위치’로 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위치에 응당 일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부록 C.4 유통기한 표시) 유통기한은 년/월/일 전까지 혹은 XX개월(년/일/주)로 표기 가능함

‘식파라치라도 배상을 이행해야한다’ 관련판결해석

최고인민법원의 식품약품의 분쟁안전 적용법을 관련 의견

- 식품, 약품의 품질문제로 인한 분쟁에서 구매자가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 배상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생산자와 판매자의 ‘구매자가 식품과 약품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배상을 목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식품라벨규정 상 한국에서는 ‘유통기한’만 표기하면 되나, 중국은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모두 표기해야 함

- 만약 생산일자를 중문라벨에 직접 년/월/일 형식으로 인쇄하는 것이 아닌 ‘포장지의 특정 위치’로 기재하고, 해당 위치에 날짜를 날인하고 유통기한은 XX개월로 기재하여 부착할 경우, 한글 포장지에 기재된 유통기한에 관한 표기사항 위치가 중문라벨의 생산일자 표기 기재 위치와 중복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유통기한을 외포장에 별도 날인하지 않더라도, 한글 기재사항 중 유통기한에 관한 내용이 있는 한 외포장에 기재된 날짜는 유통기한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잘못 표기된 예
 - # 한글 표기사항 유통기한 : 포장지 상단에 별도 표기
 - # 중국어 라벨 생산일자 : 포장지 상단에 별도 표기
 - # 중국어 라벨 유통기한 : 24개월
 - ▶ 이 경우 한글 외포장지에 기재된 한글 내용을 근거로 포장지에 날인된 날짜는 ‘유통기한’으로 오인될 수 있음
- 바른 표기 예
 - # 한글 표기사항 유통기한 : 포장지 상단에 별도 표기(실제로 상단에 일자가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 중국어 라벨 중 생산일자 : 포장지 하단에 별도 표기(유통기한 인쇄 위치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혹은 중문라벨에 직접 인쇄
 - # 중국어 라벨 중 유통기한 : 포장지 상단에 별도 표기(한글 표기내용과 일치)

“근거 없는 유기농마크 야자유”

수입 유기농식품은 중국에서 별도로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유기농표기 위반
품목 야자유(필리핀산)



<p>피해사례</p>	<p>사건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가 중경 대형 쇼핑몰에서 필리핀 수입 야자유 10병(1,680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제품 구매 당시 매대 라벨에 ‘유기농’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구매하였으나, 제품은 중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므로 소비자 권익보호법 위반, 3배 배상요구
<p>판례 분석결과</p>	<p>판결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는 원고에 제품 구매대금 1,680위안과 배상금 5,040위안(구매대금의 3배)을 지불하고 소송비를 부담한다 <p>법리 분석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질검총국에서 공포한<유기농제품인증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과 유기농제품의 상호 인증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의 수입 제품은 중국의 유기농 인증 규정에 따라야 하며, 중국의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에는 ‘유기농’, ‘ORGANIC’ 문구 등 소비자로 하여금 유기농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기나 도안 삽입을 금지한다고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는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기타 국가에서는 인증을 받았으며, 중국과 유럽은 유기농 인증 상호 협정에 관하여 협상한 적이 있는 만큼 실제 유기농 요구에는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에서는 마트의 위법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되어, 실제 구매 행위로 이어지게 하는 ‘오도’에 해당한다고 판결, 1, 2심 모두 소비자 승소판결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조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있을 경우 손실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3배 배상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유기농제품 인증관리방법(2014년 4월 1일 실시)

유기농제품 인증관리방법

- (제18조) 중국으로 유기농제품을 수출하려는 국가나 지역의 유기농 제품 인증체계와 중국 유기농제품인증 체계가 동일할 경우 중국 국가인증 인가감독 관리위원회(CNCA)은 기타 주관부문과 유관 비망록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9조) CNCA와 유기농제품인증 동일 효력과 관련한 유관 비망록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혹은 지역의 수입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중국 유기농제품의 유관 법률과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 (제35조) 중국 유기농제품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에는 ‘유기농’, ‘ORGANIC’ 등 제품을 유기농으로 오인할 수 있을 만한 표기나 도안의 삽입을 금지한다

3배 배상 규정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조 3배 배상규정

- (배상규정)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기만행위가 있을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며,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가격 혹은 제공받은 서비스 가격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금이 500위안 미만이면 500위안을 최저 배상금으로 한다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한국과 중국은 유기농 제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유기농 제품은 중국에서 ‘중국기준에 의한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후 중국의 유기농 인증마크를 포장지에 삽입하거나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음

- 중문라벨에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글 포장지에 기재된 ‘유기농’ 혹은 ‘ORGANIC’ 문구는 기재가 불가능하므로, **포장지를 변경하거나 변경이 어려울 경우 라벨이나 스티커로 가려서 수출을 진행해야 함**
- 실제로 2014년 유기농인증법 개정 후 중국 인증감독위에서 중국 각 지역 검역국으로 <수입유기농제품입경검역업무지침>(시행) 통지를 하달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수입 유기농제품 검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포장지에 외국어로 ‘유기농’ 등이 기재된 제품은 이 문구를 가리도록 규정, 가릴 수 없을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제품들에 대한 정기 샘플링 검사 등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정명령 조치를 하고, 3만위안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업무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 요망
-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문 기관을 통해 중국의 유기농 인증 요구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을 진행

15

“6.5% 알코올 도수 포도주”

제품유형별 정확한 국가표준을 찾아 중문라벨에 반영하여 부착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국가표준 요구사항 미달
 품목 포도주(이탈리아)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가 하남성 정주시 대형 쇼핑몰에서 이탈리아 수입 포도주 27병 (4,266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포도주제품의 국가표준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는 반드시 7% 이상이어야 하나, 해당 제품의 알코올 도수는 6.5%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식품이 아니므로 10배 배상 요구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원고는 피고에 27병을 반품하고, 피고는 구매 금액 4,266위안을 환불한다
- 피고는 원고에 42,660위안(구매대금의 10배)을 배상금으로 지불한다

법리 분석결과

- 포도주 국가표준 GB15037-2006에 따르면 포도주의 알코올 도수는 7%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 피고는 해당 국가표준은 2017년 3월 24일 중국 위생부의 국가표준 변경 공고에 따라 추천참고 표준으로 전환되었고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저알콜포도주의 경우 알코올 농도는 1%~7%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포도주는 저알콜 포도주로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변론함
- 법원에서는 원고가 구매한 시점이 2017년 2월로 국가표준 변경 공고가 나온 시점인 3월보다 앞서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생산 시기를 고려했을 때 변경 전 국가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당시 유효한 국가표준은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모든 식품에 최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한 것은 위법으로 판단, 10배 배상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중국 국가표준 분류

GB 강제표준을 최우선 적용하며, 상위 표준이 없을 경우 하위 표준을 참고함을 원칙으로 함. 해당 사례는 강제 국가표준이 추천 국가표준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강제 국가표준을 우선 적용한 사례

- GB : 강제 국가표준
- GB/T : 추천 국가표준
- DB : 지방표준
- SB : 성급 표준
- QB : 기업표준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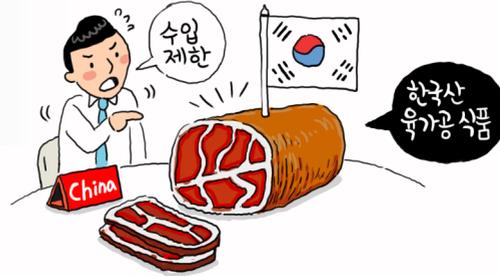
국가표준은 연도별로 수정 공고가 나오거나 표준 자체가 갱신되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 당시 확인이 필요함

- 변경된 것을 모르고 구 표준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문라벨을 제작하여 부착할 경우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특히 국가표준 갱신이 아닌 중국 위생부에서 임시로 발표한 수정 조치 혹은 관련 공고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므로, 전문 기관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국가표준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16

“중국 온라인상 판매되는 육포, 소고기다시다” 한국은 상시 전염병 유행 지역으로 육가공품 수입 금지

구분 식파라치
유형 육가공식품 수입 규정 위반
품목 육포, 쇠고기맛내기조미료(한국산)



피해사례	<p>사건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고(직업 파파라치)가 타오바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공육 등이 포함된 한국산 식품 구매(1,384위안) 후 소송 제기 제기사유 : 한국은 구제역 상시 발생 국가로 유관 동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음
판례 분석결과	<p>판결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자는 원고에게 환불 및 배상금(구매금액의 10배) 13,840위안을 지불한다 판매자(피고)는 원고의 공증비용과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p>법리 분석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은 중국은 유관 규정에 따라 한국산 육가공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소고기 육포, 소고기 맛내기 다시다는 정상 수입된 제품이 아니며, 식품안전에 위배되는 식품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는 심양시출입검역검역국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신청답변서>를 공증하여 증거로 제출함 * 피고는 정상 수입된 제품이 아니므로 유관 수입검역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법원은 판매자가 수입검역합격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정상 수입된 식품임을 증명할 수 없으며, 설사 정상 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육가공품 수입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검역국의 위생증만으로는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육가공식품 수입 관련 규정

수출입육류제품검역검역감독관리방법 제9조

- (수출상/제조상 비안관리)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에 육류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에 대해 비안 관리 제도를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비안된 수출상과 대리상의 명단을 발표한다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 ① **제품에 육가공품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
 - ② **일부 검역국에서 미량일 경우,**
 - ③ **열처리 과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수입 후 판매 과정에서 식파라치의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중국 질검총국의 공식적인 의견은 미량이라고 할지라도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삼계탕 제외)
 - 육가공품의 비정상경로를 통한 수입은 수입증명을 제시할수 없어, 식파라치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17

“러시아산 소고기는 중국에서 수입 금지” 비정상경로 유입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어

구분 식파라치
유형 육가공식품 수입 규정 위반
품목 소고기 통조림 (러시아)



피해사례	<p>사건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가 타오바오 인터넷 쇼핑몰에서 러시아산 육류 통조림(구매금액 총 4,630.5 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러시아는 렘피스킨병 상시 발생 국가로 러시아산 소고기와 그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례 분석결과	<p>판결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는 원고에 구매대금 673.3위안과 배상금 6,733위안을 지불한다 <p>법리 분석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에 육류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에 대해 비안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목록 중 러시아산 쇠고기 제품은 등록된 기록이 없음 • 피고는 정상수입을 증명하는 수입검역 증서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비정상 경로로 유입된 식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10배 배상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육류제품 관련 수출상 또는 대리상 관리제도 규정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 제 135호령
수출입육류제품검역검역감독관리방법 제9조

- (수출상/제조상 비안관리)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에 육류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에 대해 비안 관리 제도를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비안된 수출상과 대리상의 명단을 발표한다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소송 대응 시 비정상 경로로 수입/유통된 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식품안전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움

- 정상 경로로 수입/유통된 육가공 제품(육류 미량 함유)은 수입통관 당시 검역국의 의견과 전염병에 관한 안전성 입증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소송에 대응할 수 있으며, 판매 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비안 관리 제도 :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주체에 대해 해당 자격 및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18

“익모초 첨가 음료”

약재를 첨가하고자 할 경우 일반식품에도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부적합
 품목 음료(대만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가 타오바오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만산 음료 13개(975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구매한 제품에 사용된 ‘익모초’는 보건식품에만 사용 가능한 원료로 중국 위생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음료의 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식품안전법 위반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제품 구매금액 975위안과 배상금 9,750위안(구매 대금의 10배)을 지불하고 소송비를 부담한다 (1, 2심 모두 소비자 승소)

법리 분석결과

- 중국 식품안전법 제34조, 제38조에 의하면 일반식품의 원료가 아닌 물질을 원료로 하여 일반식품으로 생산 혹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익모초는 중국 약전에 기재되어 있으며 보건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식품 원료에 사용 불가
- 일반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식품안전법 제 34조 위반, 10배 배상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식품원료 사용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제34조 제1항 식품원료 사용

- 이하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생산 혹은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식품원료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제가 아닌 화학 물질이나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한 식품, 회수된 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약품첨가 관련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제38조 약품 첨가 관련 규정

- 생산, 경영하는 식품에는 약품을 첨가해서는 안되나,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인 물질은 첨가할 수 있다. 해당 목록은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의 회의를 거쳐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제정을 거쳐 공표한다

위생부의 보건식품원료관리 규범화를 위한 통지(2002년)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로 사용 가능한 명단

- <전통적으로 일반식품이면서 중약재인 원료> 87개
 주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식용 관습이 있으면서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식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의학 임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료
- <보건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114개
 일반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
 - 익모초는 해당 목록에 기재되어 있음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 원료가 중국에서 일반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확인하여 통관이나 유통 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 만약 중약재인 원재료가 ‘보건식품에만 사용 가능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함

19

“비타민C 첨가 과자류”

영양강화제 기재 시 전 성분별 첨가 가능범위 확인 후 기재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과자류(한국산)



<p>피해사례</p>	<p>사건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 수입산 체중조절용 과자 255개(2,626.5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광저우 1심 원고 패소, 2심 승소) • 제기사유 : 구매한 제품의 중문라벨 중 성분에 '영양강화제(비타민C)'가 기재되어 있는데, 영양강화제 국가표준 중 비타민 C는 과자류에 첨가가 불가하므로,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p>판례 분석결과</p>	<p>판결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판결(원고 패소, 피고 배상의무 없음)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 제품 구매대금 2,626.5위안과 배상금26,265위안 (구매대금의 10배)을 지불한다 <p>법리 분석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강화제 국가표준 GB14880에 따르면 비타민C는 풍미발효유, 조제분유, 고체음료, 콩가루, 캔디, 과채음료 등에 첨가 가능하며 그 용량이 제한되어 있음. '과자류'는 해당 목록에 없으므로, 비타민C는 과자류에 첨가 불가 * 피고는 1심에서 비타민C는 해당 제품의 원료에 사용된 '치즈'에 첨가한 것으로 치즈는 '풍미발효유'로 만든 것이며, 치즈는 과자와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이를 인정, 1심 원고 패소 • 2심에서는 피고의 1심 변론 내용에 대하여 영양강화제(비타민C)는 성분표에 다른 원료들과 동일하게 단독 병렬 표기한 것이므로 '과자'에 첨가한 것이지 '풍미발효유'에 첨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풍미발효유(치즈)에 첨가한 것이라고 해도, 영양강화제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첨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므로 1심 판결을 취소, 10배 배상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영양강화제 사용기준

식품안전국가표준 GB14880-2012 영양강화제 사용기준

- (비타민C)
 - 풍미발효유, 조제분유, 조제유분말, 과일통조림, 과일으깬것, 콩가루, 검, 캔디, 과(육)채음료, 유(乳)음료, 물을 주성분으로 한 음료류, 고체음료류, 젤리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영양강화제(칼슘, 철분 등 무기질과 비타민류 등)가 특정 원료에 첨가된 경우, 영양강화제 사용 규정 상 최종 제품 기준으로 첨가 가능 여부를 판단 해야 함

- **최종 제품 기준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영양강화제를 첨가했을 경우, 원료가 함유한 본연의 영양소 함량이 있거나, 가공 과정 중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치는 첨가한 영양강화제의 첨가량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성분표에 반드시 최종 제품에서 검출된 실제 영양소의 수치와 참고수치(NRV%)를 기재해야 함**

20

“비타민E 첨가 과자류”

식품첨가제 기재 시 전 성분별 첨가 가능유무 확인 후 기재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과자류(한국산)



피해사례	<p>사건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가 북경 대형 소포물에서 한국 수입산 과자 5개(113.5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구매한 제품의 중문라벨 중 성분에 '식품첨가제(비타민E)'가 기재되어 있는데, 식품첨가제 국가표준 중 비타민 E는 과자류에 첨가가 불가하므로,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례 분석결과	<p>판결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는 피고에 구매 제품 5개를 반품한다 • 피고는 원고에 제품 구매대금 113.5위안과 배상금1,135위안(구매대금 10배)을 지불하고 소송비를 부담한다 <p>법리 분석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첨가제 국가표준 GB2760-2011에 따르면 비타민E는 라면류, 복합조미료, 과채즙음료, 풍미음료, 팽화식품 등에 첨가 가능하며 그 용량이 제한되어 있음. '과자류'는 해당 목록에 없으므로, 비타민E는 산화방지제의 용도로 과자류에 첨가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는 대형마트의 신분으로 제조 과정에 관한 것까지 확인이 어렵고, 중문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에 한해 수입증명을 확인했기 때문에 고의성 없다고 주장함. 또한 소송 시점에서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식품첨가제 국가표준의 제한 범위에 관한 규정상 해당 제품은 식품안전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으로, 설사 수입증명을 구비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판매한 대형마트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 • 유통기한이 지난 것과는 관계 없이, 구매 당시에 이미 마트의 행위는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10배 배상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식품안전국가표준 GB2760-2011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 (비타민E)
 - 조제유, 물이 포함되지 않은 지방과 기름, 익힌견과류, 유통처리된 면, 시리얼, 라면, 복합조미료, 과채즙음료, 단백질음료, 탄산음료, 차(커피 등) 음료, 단백질고체음료, 특수용도음료, 풍미음료, 팽화식품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기존 제품에 부착된 중문라벨 중 '성분' 기재 내용

- 성분 : 밀가루, 설탕, 식용유, 식염, 크림, 전지유, 연유, 치즈분말, **식품첨가제(탄산나트륨, 레시틴, 비타민B1, 비타민B2,비타민C, 비타민E)**
 - ▶ 해당 제품의 유형은 과자류로, 과자류에는 비타민E는 첨가할 수 없음
 - ▶ 만약 비타민E가 과자에 직접 첨가한 것이 아닌 식용유 등 기재된 기타 성분 원료에 첨가한 것이며, 식품첨가제 국가표준 GB2760에서 규정한 범위에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원료의 확장항목으로 기재해야 함
 - ▶ 예시)
 - 성분 : 밀가루, 설탕, 식용유(대두, 비타민E), 식염, 크림, 전지유, 연유, 치즈분말, **식품첨가제(탄산나트륨, 레시틴,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 비타민C : 각각의 성분은 사용용도에 따라 그 분류가 달라짐. 비타민C는 영양강화제로 사용될 수도 있고, 산화방지제로서 식품첨가제로 사용될 수도 있음

21

“황기 추출물 함유 음료”

일반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반드시 사용 근거가 있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기능성음료(한국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가 북경 대형 쇼핑몰에서 한국산 기능성음료 10상자(500병, 9,900위안) 구입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구매한 음료 중 성분 ‘황기(黃杞) 추출물’ 이 함유되어 있으며, 해당 성분은 중국 위생부에서 허가한 원료가 아니므로 식품안전법 위반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원고는 구매한 500병을 피고에 반품하고, 피고는 지불한 금액 9,900위안을 환불한다
- 피고는 원고에 99,000위안(구매대금의 10배)을 배상금으로 지불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위생부의 정보공개 신청 회신 중 ‘황기(黃杞)’, ‘황기추출물’의 유관 정부 정보 부재
- 특정 물질을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약재이면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식품원료이어야 함**
- 신식품원료 유관 규정 중 신식품원료는 국가위생부의 안전성평가를 거친 후 식품생산과 경영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 원고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황기가 중국에서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 * 피고는 회사 영업허가증, 해관 통관증명서, 상표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함
- 법원에서는 피고가 황기에 대한 중국 사용 관습을 증명하지 못했고 해당 제품에 대한 중국 위생부에서 안전성 관련 정보 부재 회신을 근거로 대형마트로서 **식품안전에 대한 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10배 배상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신식품원료안전성평가관리방법

신식품원료안전성평가 관리 방법

- (제2조) 신식품원료는 중국에서 전통식용관습이 없는 것 이하 물품을 지칭 한다
 - 동식물과 미생물
 - 동식물과 미생물에서 분리한 성분
 - 원래 있던 결합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 식품 성분
 - 기타 새로 연구/개발된 식품 원료
- (제22조) 전통식용관습의 정의
 - 성(省)관할 구역 중 30년 이상의 정형/비정형화되어진 포장으로 식품 생산과 경영의 역사가 있어야 하며, <중국약전>에 기재되지 않은 것.
- (제4조) 신식품원료는 반드시 중국 위생부의 안전성평가를 거친 후 식품생산과 경영에 사용이 가능함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원료에 대한 심의는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식품 분류에 첨가가 가능한 원료인지, 사용 근거를 명확히 확인한 후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에서는 통상 사용되는 식품의 원료라고 할지라도, 중국에서는 해당 원료가 반드시 ‘30년의 전통적인 식용관습(통상 당근, 사과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원료)’이 있거나, ‘중약재이면서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목록’에 포함, 혹은 ‘신식품원료’로 분류되어 있어야 함
- 상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통 과정 중 식파라치의 위생부 정보공개 신청 등의 과정을 통해 문제화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닭벼슬 추출물 사용 식품”

신개발 원료 사용제품은 <신식품원료>목록 확인 후 유통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기능성식품(한국)



<p>피해사례</p>	<p>사건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가 광저우 마트에서 한국산 기능성식품 11개(2,233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구매한 제품에 사용된 ‘닭벼슬추출물(Comb Extract)’은 특정물질로, 신식품원료로 등록 후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이므로 신식품원료 등록 없이 첨가된 원료를 보건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판매한 마트는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p>판례 분석결과</p>	<p>판결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는 원고에 제품 구매 금액 2,233위안과 배상금 22,330위안을 지불하고 소송비를 부담한다 (1, 2심 모두 소비자 승소) <p>법리 분석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법 제37조에서는 신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국무원 위생부에 안전성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 없는 원료일 경우 신식품원료로 위생부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함 (전통적인 식용관습 : 30년간 성 관할 지역 내 식용/생산 경영의 역사가 있어야 하며, 중국 약전에 기재되지 않아야 함) * 피고는 해당 제품이 식품안전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식약국의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함 • 법원에서는 피고는 식품을 경영하는 판매자로서 응당 식품안전 관련 심의를 사전에 진행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하였으므로 10배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10배상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신식품원료 사용 관련 법률 근거

식품안전법 제 37조 신식품원료 사용

- 신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첨가제 신품종 혹은 식품관련 신품종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국무원 위생부문에 유관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국무원은 신청 접수 후 60일 내 안전성 평가 심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식품 안전의 요구에 부합할 경우 허가를 공표하며, 안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중국에서 특정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식품원료>로 위생부에 허가를 받아야 일반식품에 사용이 가능함

특정 물질에 대한 범위

1. 중국에서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 없는 동물, 식물, 미생물
2. **동/식물과 미생물에서 분리된 성분**
3. 기존 결합 구조에 변화가 생긴 식품의 성분
4. 기타 새롭게 연구, 개발된 식품 원료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라 함은 성, 직할구역 내 30년 이상 정형/비정형화된 포장으로 생산 혹은 경영되어 온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약전(药典)>에 기재 되지 않은 것

▶ ‘닭벼슬 추출물’은 2번에 해당(닭의 일부 부위에서 추출한 원료)하므로 신식품 원료 목록에 없는 원료라면 일반 식품에는 사용이 불가능함

▶ 통상 ‘추출물’이라는 단어는 기존의 물질에서 ‘새로운 물질’을 추출한다는 의미로 중국에서 추출물이라는 단어는 원료명칭 기재 시 신중하게 기재해야 함.

(예시 : 대추추출물 → 대추를 단순히 끊어서 얻은 액체라면 이는 추출물이 아닌 ‘대추즙’, ‘대추액’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23

“한국에서 개발한 기능성원료 첨가음료”

중국 일반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반드시 규정에 의거한 사용 근거 있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기능성식품(고형음료)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가 京东商城에서 한국 수입 음료(고형분말) 구매(12상자, 1,999위안)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제품 성분에 기재된 ‘**참쌀프롤라민**’, ‘**홍차추출물**’은 중국에서 전통 식용 관습이 없고 중국 위생부의 심사도 거치지 않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이므로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제품 구매대금 1,999위안과 배상금 19,990위안(구매대금의 10배)을 지불한다

법리 분석결과

- 식품안전법 제37조에서는 신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국무원 위생부에 안전성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중국에서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 없는 원료일 경우 신식품원료로 위생부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함 (전통적인 식용관습 : 30년간 성 관할 지역 내 식용/생산 경영의 역사가 있어야 하며, 중국 약전에 기재되지 않아야 함)
- 수출입식품안전관리 방법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위생 검역 합격증을 발급받은 후 판매가 가능함
 - * 원고는 칭다오 검역국에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는지 정보 공개 신청을 한 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함
 - * 칭다오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해당 제품이 식품안전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므로 행정 처벌 대상이라는 회신을 보내음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신식품원료 사용 관련 법률 근거

- 식품안전법 제 37조 신식품원료 사용
- 55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한국에서 개발된 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제품은 중국에서 위생부의 안전성 평가 후 ‘신식품원료’로 등록 후 수입이 가능함

- 신식품원료 등록 절차 중 ‘안전성 평가’ 시 생산자가 해당 원료에 대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점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위생부에서 ‘신식품원료’로 공표하게 되면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중국산이나 기타 수입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음
- 일반식품으로 수입이 어려워 비정상 경로로 중국으로 반입하여 유통할 경우, 수입 경로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해당 사례와 같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아마씨 첨가 시리얼”

사용원료가 중약재라도 일반식품에 사용가능여부 사전심의 필요해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위반
 품목 시리얼(뉴질랜드)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가 북경시 대형 쇼핑몰에서 뉴질랜드 수입 시리얼(17팩, 673.3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시리얼의 성분 중 ‘아마씨’는 중국약전에 기재되어 있으나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식품에 첨가 불가,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구매대금 673.3위안과 배상금 6,733위안(구매대금의 10배)을 지불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 식품안전법 제 34조, 제 38조에 의하면 일반식품의 원료가 아닌 물질을 원료로 하여 일반식품으로 생산 혹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아마씨의 경우 중국 약전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신식품원료로 별도 발표되어 관리되는 원료가 아니므로 일반식품 원료에 사용 불가
-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검역 합격증은 단지 합법적인 수입 경로에 대한 증명일 뿐이며, 중국의 유관 규정 상 일반 식품에는 첨가 불가능한 원료가 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는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10배 배상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식품원료 사용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제34조 제1항 식품원료 사용

- 이하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생산 혹은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식품원료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제가 아닌 화학 물질이나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한 식품, 회수된 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약품첨가 가능유무

중국식품안전법 제38조 약품 첨가 관련 규정

- 생산, 경영하는 식품에는 약품을 첨가해서는 안되나,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인 물질은 첨가할 수 있다. 해당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의 회의를 거쳐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제정을 거쳐 공표한다

위생부의 보건식품원료관리 규범화를 위한 통지(2002년)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로 사용 가능한 명단

- 47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 원료가 중국에서 일반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확인 후 수출을 준비하여 통관이나 유통 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 중국은 수입식품뿐만 아니라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원료’에 대한 심의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음
-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통상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 있는 원료 외 ‘중약재’를 기준으로 일반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것을 리스트화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신식품원료’에 대한 관리 규정 등을 적용하여 원료의 안정성에 매우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음
- 일반식품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전통적인 식용 관습’은 ‘30년간 성급 관할 구역에서 식용의 관습이 있는 것’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30년’의 의미는 적어도 일정 지역에서 30년간 식용의 관습이 있었고, 30년 후 이 관습으로 인한 질병이나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곧, 중국에서 전통 식용 관습이 없는 원료들은 해당 국가에서 30여년의 관습을 증명하여 신식품원료로 등록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입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25

“코엔자임Q10 영양제” 보건식품은 일반식품으로 수입, 판매 금지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영양제(미국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가 정저우시 대형 쇼핑몰에서 미국수입 유명 브랜드 영양제(코엔자임Q10) 2병(358위안) 구매 후 소송 제기
- 제기사유 : 코엔자임Q10은 중국에서 보건식품 원료로만 사용 가능한 규정이 있으므로, 보건식품 인증 없이 일반식품의 라벨만을 부착하여 판매한 것은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 요구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 구매대금 358위안과 배상금 3,580위안(구매대금의 10배)을 지불한다

법리 분석결과

- <코엔자임Q10을 포함한 보건식품의 등록 신고와 평가에 관한 규정> (2009년, 중국 식품약품관리감독국)에 따르면 해당 원료는 보건식품 원료로 반드시 보건식품등록 후 판매를 해야 한다고 규정, 1일 섭취량은 50mg 이하로 규정함
- 또한 섭취 부적합군에 청소년과 어린이, 임산부와 알레르기성 체질인 사람을 기재하고, 주의 사항 문구에 반드시 '치료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자는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 의 문구를 기재해야 함
 - * 원고는 해당 제품의 중문라벨에는 1일에 100mg의 코엔자임Q10이 함유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 회 1알, 1일 2알 복용이라고 되어 있어, 1일 50mg의 제한량을 초과했으므로 설사 보건식품으로 등록이 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불합격 제품이라고 주장함
 - * 피고는 검역합격증 등을 들어 수입 합격제품임을 주장함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식품원료 사용 규정

중국식품안전법 제34조 제1항 식품원료 사용

이하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생산 혹은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식품원료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제가 아닌 화학 물질이나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한 식품, 회수된 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가능성’ 원료를 일반식품에 첨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원료가 중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알아봐야 함

- 전문 기관을 통해 중국 유관 부문의 공고, 시행령 등을 조회하고, 설사 일반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섭취 제한 규정이나 부적합군에 대한 기재 요구사항이 존재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중문라벨을 작성해야 함
- 코엔자임 Q10은 복용 시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어 중국에서 보건식품으로 관리되는 원료이며, 유관 규정 상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인 원료’ 외의 원료와는 배합을 금지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함

26

“아마씨가루 포함된 빵가루 판매 불가” 가루형태로는 식품첨가제 사용 불가해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빵가루(한국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직업 파파라치), 피고(무역업자)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빵가루 (아마씨 가루 포함)에 대해 민사소송 및 행정고발을 병행
- 제기사유 : 중국에서 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마씨가루가 포함된 식품을 판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요청 및 화해금 미지급시 고발하여 행정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소송 : 피고(무역업자)는 원고에 10배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 행정고발 : 품질감독검역국으로부터 과태료 15만원 처벌

법리 분석결과

- 중국법상으로 아마씨는 아마씨 기름을 짜는 용도로만 유통이 가능하며, 아마씨유 또는 아마씨 조청 등 2가지 가공식품만 식품으로 인정받음. (아마씨가루 불가)
- 본건에서 무역회사는 중국법의 관련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수입하였기에 불이익을 당하게 됨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식품첨가제 관련 과태료 부과

중국식품안전법 제124조 식품첨가제 관련 과태료 부과

- 아래의 행위가 있으나 범죄의 수준까지는 아닌 경우, 그 불법수입을 몰수, 불법 경영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몰수, 불법 경영한 식품이나 식품첨가제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만~10만원 과태료, 1만원 이상인 경우 10배~12배의 과태료 부과
- (8) 새로운 식품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신규 식품첨가제를 생산하였으나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중국으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는 특수한 식품이나 식품첨가제의 경우, 중국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행정고발을 당한 경우 정부에 소명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주동적으로 해명을 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파라치가 계속 협박을 할 경우에는 식파라치에 대한 형사고발 등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있음

27

“성분표시 잘못된 건조 해삼” 오차범위 등 성분표시 오기 유념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원료 사용 규정 위반
품목 건조식품(해삼)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직업 파파라치)가 피고(대형 할인매장)로부터 말린 해삼 제품을 구매(약 52만 위안), 성분검사를 의뢰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 제기사유 : 해삼의 포장지 내 성분표시에 표기된 단백질 및 나트륨 함량이 검사결과와 상이(단백질 상향, 나트륨 하향표기)하여 라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피고(할인매장)는 원고가 구매한 마른 해삼을 전부 환불해준다
-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10배의 배상금 지불)는 전부 기각한다

법리 분석결과

- 제품 포장에 기재된 단백질 함량이 검사치보다 높게 기재되었지만 오차범위 내에 있음
- 식염(포장지에 성분표기 않은 성분)은 건어물의 가공과정에 발생하는 것으로 라벨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나, 식품 자체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라 사료
- 설명서의 영양가치 관련 내용은 과대홍보의 혐의가 있으나, 식품 안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함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라벨기재사항 및 관련 과태료 부과

중국식품안전법 제67조 라벨기재사항

- 포장식품의 라벨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함
(2) 성분과 원재료

중국식품안전법 제125조 및 라벨 관련 과태료 부과

- 아래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불법수입을 몰수, 불법 경영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몰수, 생산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재료 등 몰수, 불법경영한 식품이나 식품첨가제의 금액이 1만위안 미만인 경우 5천~5만위안 과태료, 1만위안 이상인 경우 5배~10배의 과태료 부과
(2) 라벨이 없는 포장식품이나 식품첨가제 생산, 또는 라벨이나 설명서가 본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이나 식품첨가제 생산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식품수출업체의 경우, 주기적으로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포장지에 표기하는 성분표기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품 포장의 라벨이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판결 향방에 중요
- 그러나 식품안전법상 라벨의 표기가 실제와 다를 때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원 재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판사에게 적극적 해명이 필요함
- 최근일자 성분검사표 등 중국 식품안전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가 될 근거를 마련하면 대응에 유용함

“칼슘을 첨가한 조미김”

조미김에 칼슘 첨가 불가, 중문라벨 성분에 칼슘 기재 불가

구분 식파라치
 유형 영양강화제 첨가 규정 위반
 품목 조미김(한국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직업 파파라치)가 상해 대형마트에서 조미김 48개(648위안)구매 후 소송 제기 (2016년 6월 원고 승소판결, 2016년 11월 상소결과 원심 판결유지)
- 제기사유 : 중문라벨 성분에 기재된 ‘칼슘’의 영양강화제 첨가 규정 위반, 식품 안전법에 위배된 식품 판매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유통업체는 구매대금을 원고에 환불한다
- 유통업체는 원고에 배상금 6,480위안(물건구입가의 10배)을 지불한다
- 유통업체(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은 강제성 규정으로 영양강화제 첨가 시 반드시 해당 품목에 첨가 가능 여부 확인 후 첨가해야 함
- **조미김은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중 (해)조류 및 조류제품으로 분류됨**
영양강화제 국가표준 중 칼슘은 해당 분류에 첨가 불가
 - * 대형마트는 해당 제품은 김 본연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성분표에 잘못 명기한 것으로 라벨 하자라고 주장
 - * 해당 사례는 라벨 하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
- 마트가 판매 전 라벨 검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10배 배상 판결**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칼슘 첨가가능 품목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14880-2012 부록 A1, 식품영양강화제 사용 규정 칼슘 첨가 가능 품목

- 조제유, 조제분유, 치즈, 아이스크림, 콩/두유분말, 쌀/쌀가공품, 소맥분/소맥가공품, 잡곡분/잡곡가공품, 연근전분, 즉석섭취곡물(시리얼류), 빵, 케익, 과자, 베이커리 식품, 소시지류, 육송(고기가루), 육포, 난백분류, 식초, 음료류, 과채즙 음료, 고형(분말)음료, 젤리
- 품목별 첨가 제한량 기준은 별도 규정에 따름

구매 대금의 10배 배상 판결 적용 조항

-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0배 배상규정
- 13페이지 관련규정 참고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제품 수출 전 영양강화제의 종류와 첨가된 양이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진행 후 중문라벨 제작 및 부착

- 한글 외포장지를 사용, 중문라벨 부착 후 수출 진행 시 한글포장지에 기재된 내용 중 영양강화제 첨가 강조(예, 전면에 광고 문구로 ‘칼슘이 첨가된’, ‘비타민을 첨가한’ 등)문구가 있을 경우 중문라벨에 해당 영양강화제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첨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글 포장지의 모든 기재 내용 심의 진행 후 수출 진행(중문라벨과 한글기재내용 일치)

29

“라벨내용과 실제 영양성분 함량 불일치 호두과자” 실제영양성분 수치 주기적 확인 필요해

구분 식파라치
유형 영양성분 수치 불일치
품목 호두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직업 식파라치)는 피고1(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피고2(제조상)의 호두제품(1,838위안)을 구매 후 검사기관의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 제기사유 : **영양성분의 함량이 라벨 상의 기재와 불일치 등** 식품안전법에 반하는 식품을 판매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피고2는 구매대금을 환불하며, 해당물품을 돌려받는다
- 피고2는 원고에게 **배상금(물건구입가의 10배)**을 지불한다
- 피고2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라벨상의 영양 관련 정보는 진실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 에너지와 영양성분의 함량은 규정된 오차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입주업체에 대한 심사를 소홀할 경우, 행정 처벌과 배상책임이 있음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3.1조 표기요구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28050-2011 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3.1조 표기요구

3.1 포장식품 영양라벨에 표기한 모든 영양정보는 진실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허위정보를 기재하면 안 되고, 제품의 영양기능과 기타 기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6.4조 오차범위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28050-2011 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6.4조 오차범위

6.4 제품 유통기간 내에 에너지와 영양성분의 함량의 오차가능범위는 표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책임

중국식품안전법 제131조 온라인 쇼핑몰의 책임

-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온라인 식품경영자에 대한 실명등록·허가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보고·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이상 인민 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영업 정지**를 명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식품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온라인 식품경영자 또는 식품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온라인 식품경영자의 실제 명칭, 주소, 유효 연락처** 등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온라인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배상한다. 온라인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배상한 후 온라인 식품경영자 또는 식품생산자에게 **소추권**을 갖는다. 온라인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약속을 한 경우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영양성분은 원료의 수확기간, 당해 날씨 등의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함

- 고가의 제품일수록 식파라치의 타겟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양 성분 등은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명칭	品名: [redacted]	규격
형량	净含量: 175克 规格: 25克X7	
첨가성분	配料: 扁桃仁, 蓝莓干, 麦芽糖, 白砂糖, 芝麻, 食用盐 过敏提示: 此产品含有坚果及其果仁类别	
생산지	产地: [redacted] 执行标准号: GB/T 22465	집행표준
생산일자	生产日期: 见包装顶部	유통기한
보관방법	贮藏条件: 请置于阴凉干燥处	
제조상	制造商: [redacted]	생산허가증번호
위탁측	地址: [redacted]	주소
전화	委托方: [redacted]	주소
홈페이지	电话: [redacted] 公司网址: [redacted]	
	营养成分表	영양성분표
	项目 每份(25g) NRV%	
	能量 598kJ 7%	
	蛋白质 3.8g 6%	
	脂肪 10.0g 17%	
	碳水化合物 9.6g 3%	
	钠 36mg 2%	

30

“중문표기 잘못된 외국 초콜릿” 외국어와 중문내용 일치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외국어와 중문내용 불일치
품목 초콜릿



피해사례	<p>사건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고(직업 식파라치)가 피고(슈퍼마켓)의 사업장에서 초콜릿(359위안)을 구매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제기사유 : 영양성분표의 중문과 영문 내용이 불일치 등 식품안전법에 반하는 식품 판매
판례 분석결과	<p>판결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고는 구매대금을 환불하며, 해당물품을 돌려받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물건구입가의 10배) 지급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p>법리 분석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벨 표시내용은 통용의 한자를 사용하고 동시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외국어는 중문 내용과 일치해야 함 소비자는 생산자 또는 경영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경영자는 배상 후 생산자에게 소추권을 가짐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포장식품 라벨통칙 3.8조 표기문자의 기준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2011
포장식품 라벨통칙 3.8 표기문자의 기준

- 3.8 규범화한 한자(상표 제외)를 사용해야 한다. 디자인 기능을 가진 각종 예술체는 정확히 기재하고 쉽게 구별되어야 한다
- 3.8.2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중문과 일치(상표, 수입 식품의 제조상과 주소, 외국 유통상의 명칭과 주소, 홈페이지 제외)해야 한다. 모든 외국어는 대응하는 한자보다 사이즈가 커서는 안 된다(상표 제외)

책임부담

중국식품안전법 제148조 1항 책임부담

- 소비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의 배상요구를 받은 생산경영자는 **우선책임제를 시행하여 우선적으로 배상**을 하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경영자는 배상 후 생산자에게 소추권을 가진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생산자는 배상 후 경영자에게 소추권을 가진다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반드시 전문가 또는 실무자가 중문 및 영문의 표기 일치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함

- 중국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국식품의 라벨 대부분이 식품 안전법에 반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글(외국어)표기와 중문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예로, 성분을 보면 한글에는 어떤 성분은 괄호()내에 원산지명을 표기하였으나 중문표기상에는 괄호()도 없고, 원산지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임. 현저하게 확연히 구별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중문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제품들이 많음

31

“무늬만 수타면”

제품 명칭과 실제 배합성분 일치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제품명칭 부합여부
 품목 면 가공식품(한국산)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직업 파파라치)가 모 대형매장에서 면 가공식품(수타면) 300여 봉지 구매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 제기사유 : 실제 내용물이 공장에서 기계로 생산한 면이라는 것을 증명, 제품명(수타면)과 불일치하는 식품을 공개적으로 판매, 손해배상 요청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피고(대형매장)는 원고에 10배의 배상금을 지불하라

법리 분석결과

- 기계로 만든 면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수타면’으로 기재한 것은 식품안전기준과 식품라벨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 이를 판매한 대형매장은 제품에 대한 심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식품라벨, 설명서 내용 등

중국식품안전법 제17조 식품라벨, 설명서 내용 등

- 식품라벨, 설명서에는 허위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생산·경영자는 라벨, 설명서의 내용에 책임을 지며, 식품과 그 라벨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판매하여선 아니 된다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중국어로 제품과 그 구성 성분의 명칭을 정확하게 번역하여, 소비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식품포장의 라벨은 반드시 내용물과 일치해야 함. 혹시 실수로라도 그 라벨 기재가 내용물과 차이가 있을 경우, 민사책임 내지는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2

“품질등급 미기재 건포도” 특정품목은 품질등급 기재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품질등급 누락
품목 건포도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직업 식파라치)가 피고(슈퍼마켓)의 사업장에서 건포도(493위안)를 구매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 제기사유 : **품질등급 미기재** 등 식품안전법에 반하는 식품을 판매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피고는 구매대금을 환불하며, 해당물품을 돌려받는다
-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물건구입가의 10배)을 지불한다
-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라벨 · 표지 · 설명서는 식품안전표준 관련 내용임
- 식품 품목에 별도의 품질등급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표시해야 함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포장식품 질량(품질)등급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2011 포장식품
라벨통칙 4.1.11.4 질량(품질)등급

- 식품이 준하는 해당 제품표준에 질량(품질)등급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 질량(품질)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의 범위

중국식품안전법 제26조 4항 식품안전표준의 범위

- 식품안전표준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4) 위생 · 영양 등 식품안전 요구와 관련된 라벨, 표시, 설명서에 대한 요구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라벨의 디자인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품목에 따라 별도의 표준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모범사례(안)



33

“포장된 녹차 원물”

농산품이라도 포장 시 라벨 등 표기해야

구분 식파라치
 유형 포장식품과 농산품의 구분
 품목 포장 녹차



피해사례

사건개요

- 원고(직업 식파라치)는 피고(유통상)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포장된 녹차(12,600위안)를 구매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 제기
- 제기사유 : 허가증번호, 제조상 명칭과 주소 허위 및 라벨에 표준마크와 순번번호 미기재 등 식품안전법에 반하는 식품을 판매

판례 분석결과

판결결과

- 피고는 구매대금을 환불하며, 해당물품을 돌려받는다
-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물건구입가의 10배)을 지불한다
-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법리 분석결과

- 별도 규정(예로 농산품 품질안전법)에 따르는 식용농산품이라 하더라도 포장식품의 정의에 부합하면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함
- 라벨·설명서의 내용은 제품과 일치해야 함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식품 생산경영 허가제도

중국식품안전법 제35조 1항 식품 생산경영 허가제도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한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식품생산, 식품유통, 요식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법에 따라 허가를 득해야 한다. 단 식용 농산물 판매는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라벨·설명서에 대한 요구

중국식품안전법 제71조 라벨·설명서에 대한 요구

-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및 설명서에는 허위·과장의 내용이 있으면 안 되고, 질병예방·치료 기능이 언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생산경영자는 그가 제공한 라벨·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진다
-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설명서는 명확하고 뚜렷해야 하며, 생산일자·유통기한 등 사항은 명확히 표기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 그 라벨·설명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식품과 식품첨가제는 시장에 유통 시켜 판매할 수 없다

포장식품의 정의

중국식품안전법 제150조 3항 포장식품의 정의

- 포장식품이란 사전에 정량 포장하거나 포장 재료와 용기에 제작한 식품을 말한다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농산물과 포장식품에 대한 명확한 규범 및 실무적 관행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

- 모범사례(안)

제품명칭	产品名称: [redacted]
유형	类型: [redacted]
생산지	产地: [redacted]
첨가성분	配料表: [redacted]
유통기한	保质期: 12个月
질량등급	质量等级: 特级
보관방법	贮藏方法: 置于阴凉干燥处
생산허가증번호	生产许可证编号: [redacted]
제품표준번호	产品标准代号: GB/T18862
제조상	制造商: [redacted]
주소	地址: [redacted]
유통상	经销商: [redacted]
주소	地址: [redacted]
전화	电话: [redacted]
팩스	传真: [redacted]
홈페이지	网址: [redacted]
합량	净含量: 见喷码
생산일자	生产日期: 见喷码

34

“불량식품 바꿔치기 식파라치” 증거확보를 위한 엄격한 내부관리 필요해

구분 식파라치
유형 식파라치의 고의적 신고
품목 아몬드



피해사례

사건개요

- 직업 식파라치, 모 대형매장에 클레임 제기
- 제기사유 : 해당 매장에서 구매한 아몬드 식품의 유통기간 경과

사례 분석결과

대응결과

- 매장에서 해당 식파라치가 공갈협박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을 알리자 도망감

사례분석결과

- 대형매장에 인원 유동이 많고 비교적 혼잡한 틈을 타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하지만 이미 유통기간이 경과된 불량식품을 미리 매장에 갖고 왔다가 매장에서 정상적인 제품을 구매한 후 불량식품으로 바꿔치는 방식으로 매장의 배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대응방안 및 모범사례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발생할지 모르는 사안 이기에 유통업체의 경우 제품 매입이력 관리, CCTV 설치 등 자체적 주의 의무를 다하여 증거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 록

대중국 식품 통관 개요
2017 현지화지원사업 안내

at

대중국 식품 통관 개요

수출절차



통관, 중문 라벨 등록 필수 서류

수출시 수출업체 준비 사항

1. 원산지증명서 사본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2. 생산국 위생증명서/식물검역증 (KFDA) 사본
3. 제품 등록 및 판매 허가 증명서 (KFDA) 및 생산날짜 성명서 (일부 항구 요청 사항)
4. 첫 수출시 해외 수출업체 AQSIQ 시스템 등록 필수 정보
5. 제품 품질이 중국 표준에 부합하는 증명 서류(식용유, 영유아 식품, 분유 등 일부 품목에 한함)
6. 계약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검사검역기관 심사 시 필요한 기타 관련 자료

라벨 등록 필수 서류 리스트 생산업체 준비사항 (선포장 식품에 한함)

1. 성분 분석보고
2. 제품 기존 라벨 전자파일 (컬러판, 사이즈 표시 필수, 고해상도)
3. 제품 기존 라벨 중문 번역본 (외국어 라벨이 아닌 중문 라벨인 경우 생략)
4. 중문 라벨
5. 생산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장필수)
6. 지리표시, 제품의 우수성, 등급 및 고품질 등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경우 관련증서 및 중문 번역본 제출
7. 라벨에 특별한 성분이 있다고 강조하고 싶을 경우 관련 증명 자료 및 중문 번역본 제출
8. 영양성적서 원본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등 시험성적서, 제3자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 / 자체 시험 또는 계산 가능) 및 중문 번역본
9. 라벨에 GMP, HACCP, 혹은 ISO9002 인증 마크가 있는 경우 증명 자료 및 중문 번역본 제출
10. 간단한 생산공정도 (도장 필수) 및 중문 번역본
11. 기타 필수 자료

AQSIQ 전산등록

해외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등록 : <http://ire.eciq.cn> 을 통해 등록 후 중국 수출 가능

进口食品化妆品进出口商备案系统

Registration Systems of Imported Food and Cosmetic Importers and Exporters

**境外生产企业
信息记录系统**

Information Recording System
for Manufacturer Overseas

进入系统 login

已记录信息查询 The record list query

**境外出口商或代
理商信息备案系统**

Registration System for
Exporters or Agents Overseas

进入系统 login

已备案名单查询 The record list query

**境内进口商
备案系统**

Registration System for
Importers Within Borders

进入系统 login

已备案名单查询 The record list query

用户下载 DOWNLOAD

质检总局公告
AQSIQ Announcement

用户手册
User guidebook

使用帮助
Notice and Auxiliary

联系方式
contact method

통관 과정 중 관련 서류 견본

관세와 증치세 납부 영수증

收入系统: 海关系统 填发日期: 2013年6月20日 号码: N12013113008679-A01

收入机关: 企业金库	名称: 湖南多(中国)有限公司	账号:
科目: 进口关税	预算级次: 中央	账号:
收款国库: 交行重庆分行北碚新区支行	开户银行:	

税号	数量	单位	完税价格(¥)	税率(%)	税款金额(¥)
1.110000000	湖南多木瓦石颗粒材料(含税)	30.00	19,988.00	20.0000	3,997.60
金额人民币(大写): 叁仟玖佰叁拾柒元陆角					合计(¥): ¥3,937.60

中国身份证号码: 5005980046 报关单编号: 90112013113008679 填制单位: 收款国库(银行):

合同(批文)号: CQPMD: 20130607 运输工具号: CX3260 发货单号: 16068281463

65091 重庆 海关 进口增值税 专用缴款书 (1305)

收入系统: 税务系统 填发日期: 2013年6月20日 号码: N12013113008679-102

收入机关: 企业金库	名称: 湖南多(中国)有限公司	账号:
科目: 进口增值税	预算级次: 中央	账号:
收款国库: 交行重庆分行北碚新区支行	开户银行:	

税号	数量	单位	完税价格(¥)	税率(%)	税款金额(¥)
1.210000000	湖南多木瓦石颗粒材料(含税)	30.00	20,426.34	17.0000	4,016.35
金额人民币(大写): 肆仟零壹拾陆元叁角伍分					合计(¥): ¥4,016.35

申请单编号: 5005980046 报关单编号: 90112013113008679 填制单位: 收款国库(银行):

合同(批文)号: CQPMD: 20130607 运输工具号: CX3260 发货单号: 16068281463

税款所属: 2013年7月5日前 报关单号: 16068281463

纳税人识别号: 5001085636309580320 6.207 制单人: B00402

입경 화물 보관단(报关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货物报关单

企业留存联

预录入编号: 1111111111

海关编号: 1111111111

收货人: 厦门东德海味有限公司	进口口岸: (3711) 东德海味	进口日期: 20160316	申报日期: 20160328
消费使用单位: 厦门东德海味有限公司	运输方式(2): 水路运输	运输工具名称: SHIN CHUN/W901	提运单号: A13
申报单位: 厦门东德海味有限公司	监管方式: 一般贸易	征免性质(101): 一般征税	备案号:
贸易国(地区):	启运国(地区): (143) 台湾金马关地区	离境港: (1561) 基隆	境内目的地: (35021) 厦门特区
许可证号:	成交方式(3): FOB	运费: 142/30/3	保费: 000/0.3/1
合同协议号: 60310	件数: 20	包装种类(2): 纸箱	净重(千克): 144
集装箱号: 3609 * 1 (2)	随附单证: 入境货物通关单		

备注: 拼, 港务物流拼箱仓库
随附单证号: 16016978000

序号	商品编号	商品名称、规格型号	数量及单位	原产国(地区)	单价	总价	币制	征免
1	2202900099	成分: 脱水, 甜玉米, 玉米, 红葡萄, 蔓越莓, 草莓, 覆盆子, 樱桃, 黑	72升/套 72千架 (143) 120瓶	台湾金马关地区 (143)	300.0000	36000.00	新台币	照章征税 (1)
2	2202900099	成分: 葡萄 包装规格: 600ml*12/CTN	72升/套 72千架 (143) 120瓶	台湾金马关地区 (143)	450.0000	54000.00	新台币	照章征税 (1)

特殊关系确认:

录入员: 录入单位:

相关人员:

价格影响确认:

兹申明对以上内容承担如实申报、依法纳税之法律责任

报关专用章

申报单位(签章):

支付特许权使用费确认:

海关批注及签章:

1/1

입경 화물 보검단(报检单)



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检验检疫 入境货物报检单

0 0 0 7 5 1 8

报检单位(加盖公章) 有限公司 编号 13836
报检单位登记号 联系人 电话 报检日期: 2016年06月1日

收货人 (中文) 上海有限公司 (外文)	企业性质(划“√”) <input checked="" type="checkbox"/> 合资 <input type="checkbox"/> 合作 <input type="checkbox"/> 外资				
发货人 (中文) (外文) FOOD CO., LTD					
货物名称(中/外文)	H.S. 编码	原产国(地区)	数/重量	货物总值	包装种类及数量
复合调味料	2103909000 (B/S)	韩国	75.6 千克	1080 美元	6其他 纸制罐垫材料
运输工具名称号码	船名 SUCCESS 1620*	合同号			
贸易方式	一般贸易	贸易国别(地区)	韩国	提单/运单号	1198*01
到货日期	2016-05-22	启运国家(地区)	韩国	许可证/审批号	***
卸毕日期	2016-05-22	启运口岸	韩国	入境口岸	吴淞
索赔有效期至	***	进境口岸	***	目的地	上海市黄浦区
集装箱规格、数量及号码	***				
合同订立的特殊条款 以及其他要求	*需出入境检验检疫证明(章)** 注: 41016000214收: 311600006*		货物存放地点	第三层楼	
随附单据(划“√”或补填)	标记及号码	*外商投资企业(划“√”) <input type="checkbox"/> 是 <input type="checkbox"/> 否			
<input type="checkbox"/> 合同 <input type="checkbox"/> 发票 <input type="checkbox"/> 提单 <input type="checkbox"/> 兽医卫生证书 <input type="checkbox"/> 植物检疫证书 <input type="checkbox"/> 动物检疫证书 <input type="checkbox"/> 卫生证书 <input type="checkbox"/> 原产地证 <input type="checkbox"/> 许可/审批文件	<input type="checkbox"/> 到货通知 <input type="checkbox"/> 装箱单 <input type="checkbox"/> 质保书 <input type="checkbox"/> 提货单 <input type="checkbox"/> 磅码单 <input type="checkbox"/> 验收报告	*检验检疫费			
报检人郑重声明: 1. 本人被授权报检。 2. 上列填写内容正确属实。 签名: _____		总金额 (人民币元)		计费人	
		收费人		领取证书	
		日期		日期	
		签名		日期	

注: 有“*”号栏由出入境检验检疫机关填写 ◆国家出入境检验检疫局制 [1-1(2000.1.1)]

입경 화물 검험검역증명



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检验检疫 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

编号

收货人	综合服务有限公司		
发货人	FOOD CO., LTD		
品名	见下面	报检数/重量	见下面
包装种类及数量	见下面	输出国家或地区	韩国
合同号	01	标记及号码 N/M	
提/运单号			
入境口岸	石岛		
入境日期	2016.09.05		
证明	<p>品名 品牌 原产国 规格 数量/重量 生产日期</p> <p>参鸡汤 韩国 900g **645 纸箱/**0966 千克 2016.08.31</p> <p>上述货物业经检验检疫监督管理, 准予进口。</p>		
签字: _____	日期: 2016 年		
备注	***		

2017 현지화지원사업 안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라”
“현지화사업과 함께 철저한 사전준비를!”**



식파라치 및 상표권에 관한 분쟁은 소송준비 시간 및 비용, 유통 중인 상품의 철수 등 물리적 피해를 유발하므로, 수출상품의 수입식품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료심의, 라벨통칙 규정, 상표권 도용 및 등록 등 식품 수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 안내

- 지원시기 : 연중수시
-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 지원내용

지원사업	지원범위/한도	지원내용
비관세장벽 자문	100%/10백만원	· 법률 일반 : 관련 규정, 소송 등 자문 · SPS(위생·검역)
라벨링	90%/10백만원	· 중국 규정의거 디자인, 라벨 설계 · CIQ검토, 수정사항 반영 및 보완
상표권 출원	90%/10백만원	· 유사상표 사전검토 및 절차안내 · 소속상표 부류, 상표 리터칭 등 · 상표권 출원 대행 지원

❖ 수산식품의 경우 비관세장벽 자문 외 사업 지원비율 70%

비관세장벽자문 지원사업 (식파라치 대비)

현지 법률, 통관, SPS(위생·검역) 분야에서 식파라치 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원활한 해외진출 지원하고자 현지전문기관 자문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



자문분야	세부분야	자문내용
법률일반	수입 규정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른 수입식품 준수사항 검토 등
	원료사용 규정	중국정부 허가원료 목록확인, 성분별 첨가가능 범위, 신식품원료 등록, 보건식품 검토 등
	유기농인증 규정	유기농 인증획득 절차안내, 관련문구 사용적합성 검토 등
	소송 및 상품 클레임	법률 소송 및 클레임에 대한 해석 및 의견 제공 등
SPS	위생기준 및 검역	현지법에 의거한 위생기준, 제한수치 정보 제공 및 검역대상 성분 사전검토 등

라벨링 지원사업 (식파라치 대비)

식파라치의 주요 타깃인 라벨링 표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샘플 제작·등록 지원을 통해 중국 현지 통관뿐만 아니라 우리 농식품의 원활한 현지 유통을 지원하고자 라벨링 지원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



자문분야	세부분야	자문내용
라벨 사전검토	의무표기사항	제품분류, 성분명, 수입상정보, 유통기한, 생산일자, 식용방법 등 의무표기사항 안내
	포장 및 라벨링 관련 주의사항	한글 외포장 및 중문 스티커 부착방법 등 안내
	예외적 표기사항	유기농식품, 건강식품 등 일반식품이 아닌 식품부류에 따른 예외적 표기사항 안내
라벨링 제작·등록	구비서류 등 안내	성분배합비율표, 영양성분시험성적서, 포장전개도, 제품 실물사진 등 필요구비서류 안내
	라벨증서(CCIC) 출원대행	중문라벨 시안 작성을 통한 CCIC 제출, 라벨 확정 증서 출원 지원.

- ❖ 라벨 사전검토의 경우 100% 전액지원
- ❖ 라벨 제작 및 등록 추진 시 총비용의 90%지원(업체선납 후 사후환급)
- ❖ 라벨 당 평균 소요비용 2,000~4,000 위안/ 평균 소요기간 7~14일(단, 업체 피드백 및 통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신청접수 및 현지 담당전문기관 배정



-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 수출지원사업신청 - 수출지원사업안내 - 해당 사업공고 확인
- ※ aT 수출전략처 통상지원부 (061-931-0861,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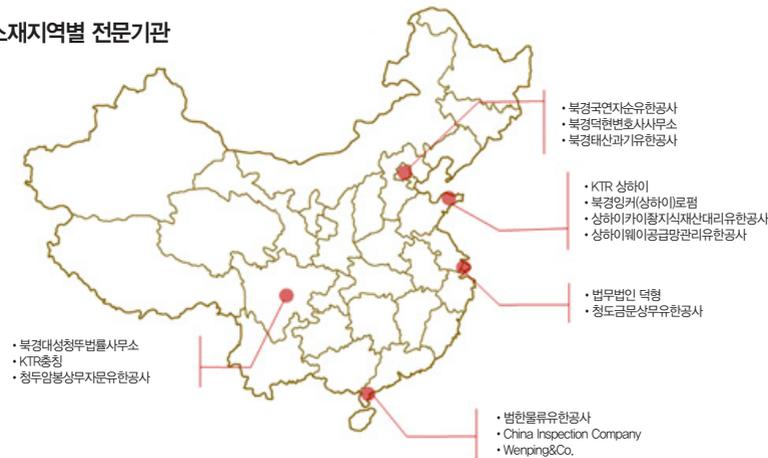
유의사항

현지화사업(라벨링)의 경우, 현지화사업(비관세장벽자문) 신청을 통해 라벨사전검토를 병행신청해야 함.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필수

중국 소재 전문기관

소재지역별 전문기관



분야별 대표전문기관

	전문기관명
법률 자문	북경태산과기유한공사 KTR 청도전문자문복무유한공사 상하이웨이공급망관리유한공사
통관 · 리벨링	KTR 청도전문자문복무유한공사 상하이웨이공급망관리유한공사 법무법인 덕형
상표권	북경국연자순유한공사 북경잉커(상하이)로펌 상하이카이칭지식재산대리유한공사

유익한 aT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한
중국 식파라치
알아보기

